

지휘서신 제7호: 건강관리, 사고 예방 및 자살 예방

1. 본 지휘서신은 건강관리 관련 기존의 모든 서신에 우선한다. 본 서신의 효력은 철회 또는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2. 관련근거

- 가. 美육군 지침 제2018-23호 주요 육군 제도의 효과 개선 (2023. 11. 8.)
- 나. 美육군규정 15-6 장교조사및심의규정 (2016. 4. 1.)
- 다. 美육군규정 350-53 군인및군인가족종합건강관리규정 (2015. 4. 14.)
- 라. 美육군규정 600-63 육군건강관리규정 (2015. 4. 14.)
- 마. 美육군규정 638-34 인명사고피해자가족통지제도 (2015. 2. 19.)
- 바. 美육군성 안내문 제600-24호 (2015. 4. 14.) 건강관리, 사고 예방 및 자살 예방
- 사. 美8군 지휘서신 제11호 (2020. 10. 3.) 생명의 가치: 육군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준비태세와 정신력, 사고 예방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3. 대상

본 서신은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의, 예하의, 또는 통제를 받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4. 목적

본 서신은 군인, 군무원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수립한다.

5. 배경

육군의 준비태세는 전장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삶의 방식의 추구, 위험한 행위의 근절, 자살의 예방은 준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육군은 위험한 행위와 자살을 근절함으로써 부대의 단합을 강화한다.

6. 내용

가. 모든 지휘관, 주요직위자, 관리감독자, 군인 및 군무원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준비태세와 정신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환경은 주요직위자가 예하 인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사적인 건강을 확인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나. 모든 군인은 필요시 보건·의료의 도움을 받으며 정신건강에 관하여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한 선입견을 배제하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모든 군인은 자신 또는 동료들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지휘관, 주요직위자, 관리감독자, 군인 및 군무원은 건강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아래의 제도들에 관하여는 부록에 상술한다.

1)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자살예방 프로그램 (부록 제1.)

주요직위자들은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충분한 자살 예방 및 인식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요직위자는 정신건강 관련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숙지한다.

2) 관심인원 관리 (부록 제2.)

주요직위자는 병지휘위험예방체계 Soldier Leader Risk Reduction Tool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속 인원들에 관한 개인적, 업무적 정보를 습득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원은 그의 위험 요소, 위험의 세부 내용, 사고를 예방할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지휘계통에 보고한다.

3) 군인 및 군인가족 종합건강관리(CSF2) (부록 제3.)

주요직위자는 CSF2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전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 및 군인가족의 최적의 정신전력을 달성한다.

7.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인사참모부 준비태세 및 정신전력 프로그램(C-1 Ready and Resilient Program)으로 한다. 연락처는 DSN 756-6235 이다.

- 붙임: 1. 부록 제1. (Appendix A)
2. 부록 제2. (Appendix B)
3. 부록 제3. (Appendix C) 각 1부. 끝.


WILLIAM D. TAYLOR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부록 제1.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아래의 책임을 수반한다:

1. 주요 예하부대는 여단 부대건강관리팀(UHPT)을 수립하고, 월간 또는 분기별로 소속 군인, 군무원 및 가족의 정신전력과 "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회의를 실시한다. UHPT는 관련 정보, 동향, 우수사례, 발전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건강관리, 사고 예방, 자살 예방 활동을 발전시킨다. 주요 예하부대는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장 주관 준비태세·정신전력 회의(Commander's Ready and Resilient Council)에 참석하여 건강관리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2. 주요직위자는 건강관리, 사고 예방, 자살 예방 등에 관한 육군 가족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지휘관 및 일선의 관리감독자들은 군인, 군무원 및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살 예방 및 도움 제도들이 각 조직에서 적절히 운용되는지 확인한다.
3. 각급 지휘관은 자살 예방 및 인식 교육이 모든 군인 및 군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Ask, Care, Escort(물어보기, 도와주기, 동행하기)(ACE) 교육은 군인, 군무원 및 가족을 위한 육군 공식 자살 예방 및 인식 교육이다.** 주요직위자를 포함한 모든 군인 및 주요직위의 군무원은 매년 ACE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여부는 전자교육관리시스템 및 교육기록에 반영된다.

가. ACE의 학습 목표는 위험요소, 이상 징후, 도움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교육이다. ACE의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주제를 포함한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스트레스 해결, 고민 대처 방법,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 금전적 건전성, 갈등 해결, 결혼 및 가족 문제.

나. ACE 교육의 교관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ACE 교육을 주관할 핵심 인원은 지휘관이 임명할 수 있다. 단, 군인, 군무원 및 가족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인식 교육에 관하여는 군종장교 및 군종실 인원들이 지휘관을 보좌하여야 한다.

다. ACE-SI는 분대장, 소대장, 소대 책임부사관 및 책임장교, 중대장 및 그에 상응하는 군무원 등 중대급의 주요직위자 및 일선 관리감독자를 위한 교육으로, 1회 교육이 요구되며, 이수시 교육기록에 반영된다.

라. 여단 및 대대는 자살 예방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담당자는 군인이어야 한다. 이 군인은 ACE-SI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담당자로서 임명 명령을 받아야 한다. 위 인원은 ACE-SI 교육을 주관하며, 관련 지도방문 및 감사에 협조한다.

마. 중대는 ACE-SI 교관을 1인 이상 유지한다. 교관은 지휘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부

대(Installation) 자살 예방 프로그램 관리자 주관 워크숍 교육에 참여하여 교관으로 인증받는다.

4. 주요 예하부대는 자살사건대응반(Suicide Response Team)을 운용한다. 자살사건대응반은 자살 또는 자살 시도 발생시 24시간 이내 소집되어 사건 파악 및 필요 후행 조치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한다. 자살사건대응반은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자살 시도 인원의 가족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5. 자살사건대응반은 사건 조사를 수행한 후, 사망사건심의위원회 및 자살사건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육군성서식 제7747호 <자살추정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고서는 아래의 세 시점에 각 제출되어야 한다.

가. 보고서 제1편: 사건 발생 24시간 내

나. 보고서 제2편: 사건 발생 5일 내

다. 보고서 제3편: 사건 발생 60일 내

6. 지휘관은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 징후가 보이는 인원을 즉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정신건강 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검사 진행 장소까지 인솔 내지 동행한다. 해당 인원의 지휘계통은 그 인원이 모든 검사·진료일에 내원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인원에 관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시한 특별한 조치들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지휘관은 검사의 내용 및 제시된 조치들을 육군성서식 제3822호에 기재하여 문서화할 책임을 진다. 중대장은 소속 인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https://medpros.mods.army.mil/eprofile/> 상의 eProfile 기록을 생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7. 지휘관은 대대의 의료 담당자를 통하여 입원 인원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입원 및 전역 후까지 필요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휘관은 모든 입원 인원에 관하여 그 직속 지휘계통이 입원 48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해당 인원 및 그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지휘관은 자살 추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육규 15-6, 육규 600-8-4 및 육규 600-63에 의거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9. 대령급 지휘관은 육규 638-34에 따라 사망한 인원의 주요 친족에게 사망 조사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위 설명은 지휘관이 아닌 다른 대령급 장교를 지명하여 하게 할 수 있다.

부록 제2.

1. 병지휘위험예방체계(Soldier Leader Risk Reduction Tool)는 병사들의 신체적, 정신·정서적, 직업적, 대인·사회적, 법적 상태에 관한 질문서이다. 병사들의 답변 결과는 지휘관 및 부서장이 개별 인원에게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SLRRT 체계는 상급자와 부하 간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고, 관리감독자들이 관심이 필요한 병사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SLRRT 체계는 병사 지도의 초기 단계에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병사에 대한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관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분대장, 소대장, 소대 책임부서관 및 책임장교, 중대장 및 그에 상응하는 군무원 등 중대급 주요직위자 및 일선 관리감독자는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에 전입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SLRRT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 분기 시행한다.
3. 주요직위자는 SLRRT 외에도 개인적인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자의 진술, 과거의 상담 및 지도 결과 등을 활용하여 병사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각 병사의 위험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U.S. Army SLRRT 사용지침 참조)
 - 가. 저위험: 병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위험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낮음.
 - 나. 중위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령,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문제,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충동적 행동 또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다. 고위험: 본인 또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가령,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저한 업무능력 결여,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협.
4. 일선의 관리감독자는 위험 행동이 예상되는 병사에 관하여 매주 지휘계통에 보고한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월간 또는 분기간 중위험 및 고위험 병사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한다. 대대장은 모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그래픽 자료(가령 사고예방 인물카드)를 활용하여 병사의 위험 수준 및 회복 경과 등을 추적해야 한다.

부록 제3.

군인 및 군인가족 종합건강관리(CSF2)는 군인, 군인가족 및 군무원의 정신전력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1. 여단, 대대 및 중대는 각 정신전력교관(Master Resilience Trainer)을 1인 지명하여 상시 유지한다. 교관의 분기별 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신전력조교(Resilience Trainer Assistant)를 둘 수 있다. 조교를 둘 경우, 조교는 육규350-53에 따라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신전력교관은 각 주요 예하부대에 대한 지도방문 및 감사 시 협조 담당자로 기능한다.
2. 병사들은 임무에 따른 필요성과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 정신전력 교육을 받는다. 규정 상으로는 12개월에 최소한 1회 교육할 것을 정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전자교육관리 체계에 기록된다.
3. 군인가족 및 군무원도 정신전력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을 권장한다. 또한 군인가족 및 군무원은 ArmyFit 웹사이트에서 Azimuth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교육은 정신전력 및 준비태세 개발센터(Ready and Resilient Performance Center)에서 예약할 수 있다.
4. 모든 병사는 매년 Azimuth 검사(구 GAT)를 받아 자신의 정신전력, 강점 및 취약점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5. 주요직위자는 정신력이 취약한 것으로 식별되는 인원을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정신전력 워크샵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워크샵은 최소 분기별 1회 Area I/II 및 Area III에서 각 시행되며, 여단의 정신건강 담당자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6.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의 주요직위자는 Army Wellness Center, 정신전력 및 준비태세 개발센터 등 정신전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하는 근처의 수단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7. 모든 인원의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주요직위자는 MWR(육군복지몰), USO(군인지원협회), BOSS(독신군인지원센터), 여행센터, SHARP, E0, Army Community Services, 적십자, 군인긴급구호협회, 군인가족지원, 군인가족 상담소 등의 수단들을 숙지하고 병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8. 지휘관은 새로 전입한 인원의 주요 친족에게 환영 서신을 발송한다. 서신에는 지휘계

통 및 사단 비상작전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 내선으로 전화할 수 있는 국번을 명시하여야 한다.